



2017년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

Product : 키위(Kiwi)

Country : 싱가포르(Singapore)

Contents

I. 시장 통계	4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6
2. 무역통계 종합분석	7
3. 품목통계 종합분석	9
II. 경쟁국가 분석	11
1. 경쟁국가 선정	13
2. 경쟁국가별 현황 파악	14
III. 통관 및 검역 정보	17
1. 통관 및 검역 절차	19
2. 관세율 정보	22
3. FTA 정보	23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24
IV. 인증 정보	25
1. 인증 취득정보	28
2. 제출서류	33
3. 전문가 인터뷰	34

Contents

V. 라벨링 정보	35
1. 라벨 표기사항	37
2. 라벨링 예시	39
※ 참고문헌	40



I. 시장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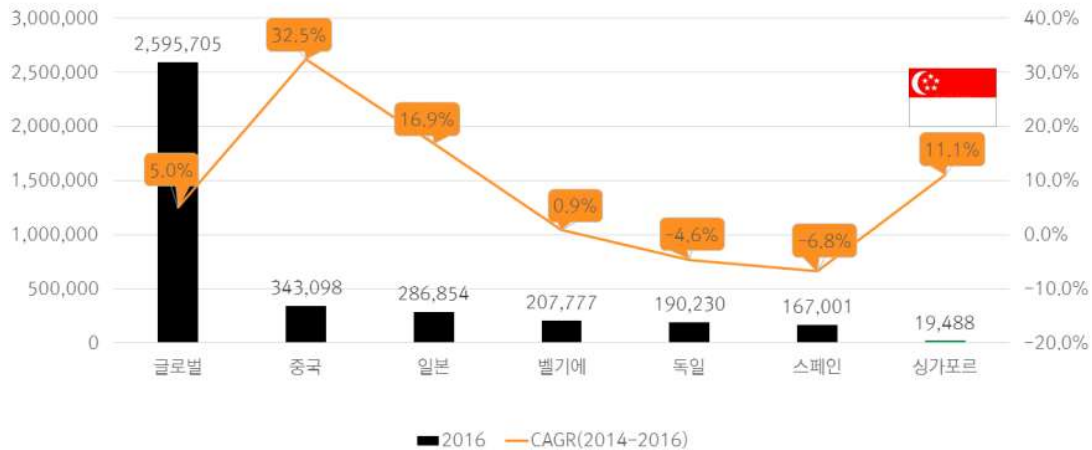
※ 시장 통계 OVERVIEW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2. 무역통계 종합분석
3. 품목통계 종합분석

시장 통계 OVERVIEW

글로벌 HS CODE 0810.50 수입액 규모 및 증감률(2014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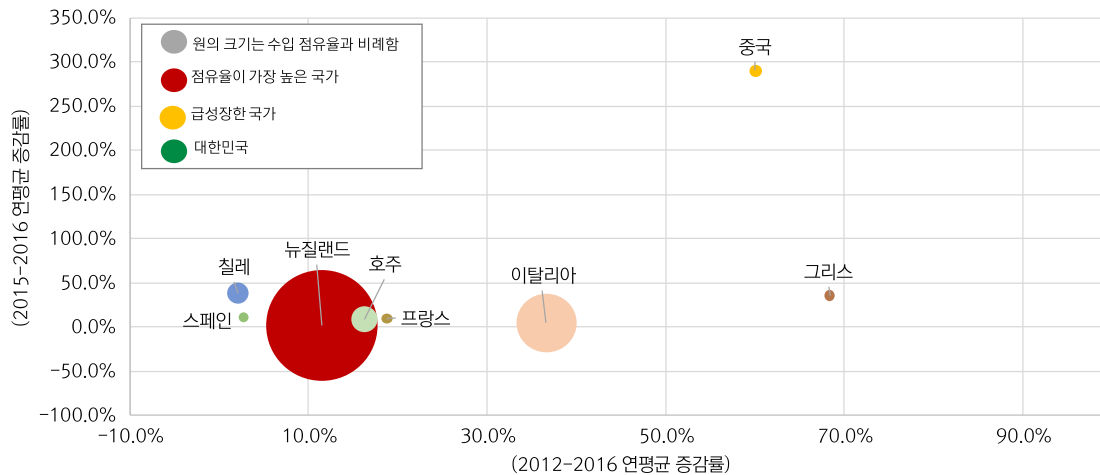
단위 : 천 달러, %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싱가포르 0810.50 수입 점유율 및 성장률 비교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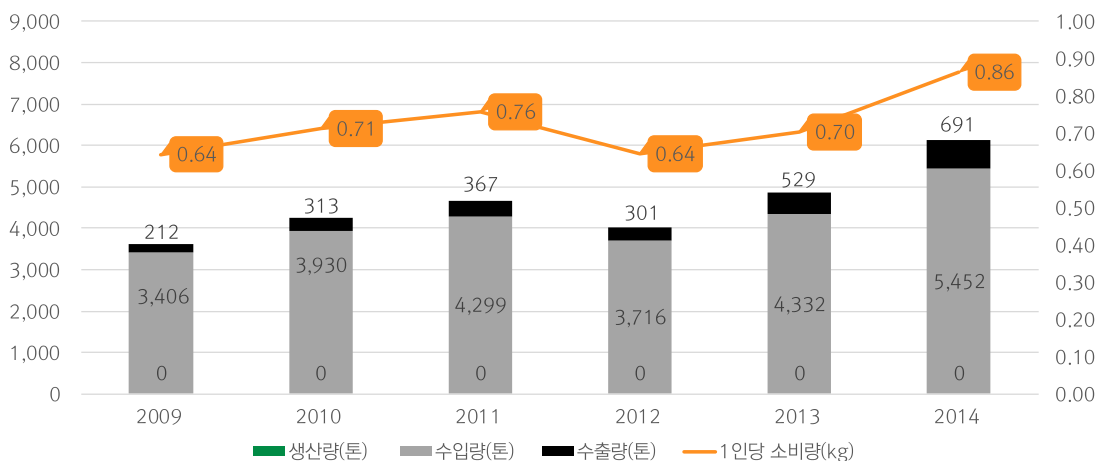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싱가포르 키위 수급동향(2009 ~ 2014)

단위 : 톤(생산량, 수출입량), kg(1인당 소비량)



출처 : FAOSTAT(www.fao.org/faostat),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1. 거품형 그래프 내 원의 크기는 싱가포르 시장 내 점유율(비중)을 나타냄
2. 거품형 그래프 내 원이 우측에 가까울수록 최근 3년간 높은 수입 증가세를 나타낸 국가임
3. 거품형 그래프 내 원이 상측에 가까울수록 최근 1년간 높은 수입 증가세를 나타낸 국가임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HS CODE 확인 사이트

1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Tradenavi www.tradenavi.or.kr
3	싱가포르 관세청 www.customs.gov.sg

키위 통계 기준 설정

키위 품목의 시장성 판단을 위해 통계 조사를 진행함. 글로벌 및 싱가포르의 수입통계 확인을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하고 조사 대상국의 시장규모 파악을 위해 품목 키워드를 조사 기준으로 설정함⁴.

수입 통계 기준, HS CODE 0810.50.00으로 설정

글로벌 및 싱가포르 내 키위의 수요 파악을 위해 전 세계 공통인 HS CODE 6 자리 0810.50을 수입통계 분석 기준으로 설정함. HS CODE 0810.50 해당 품목은 키위프루트(kiwifruit)로 한정함

표 1.1 : 키위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분류	조사 항목	통계 기준	
무역 통계	글로벌 수입규모 및 성장률	HS CODE	0810.50
	싱가포르 수입규모 및 성장률		0810.50.00
품목 통계	나라별 키위 생산량	품목 키워드	Kiwifruit
	싱가포르 연도별 키위생산량		Kiwifruit by year

표 1.2 : 싱가포르 내 키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싱가포르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0810.50.00	키위프루트(Kiwifruit)

출처 : 한국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v.sg)

4. 의뢰사 제품에 적합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법적인 효력을 가진 HS COD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2. 무역통계 종합분석

글로벌 키워 수입액 3개년 연평균 성장률⁵ 5.0%

2016년 기준 HS CODE 0810.50의 글로벌 수입규모는 25억 9,570만 5,000달러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0%의 상승세를 기록함. 수입 1위국 중국의 수입규모는 3억 4,309만 8,000달러로 연평균 32.5%의 증가세를 나타냄

싱가포르 내 한국산 키워 수입액 1년 새 2배 줄어

2016년 기준 싱가포르의 HS CODE 0810.50의 수입액 규모는 1,948만 8,000달러로 2014년 이후 3년간 연평균 11.1%의 상승세를 보임. 싱가포르 내 HS CODE 0810.50 품목 최대 수입국은 뉴질랜드로 1,228만 7,000달러를 기록함

2016년 기준 싱가포르 내 한국산의 수입 규모는 21만 1,000달러로 9위에 등극함. 한국산은 2014년도까지 수입이 없었으나 2015년부터 수입이 되기 시작해 2015년에는 50만 달러, 2016년에는 21만 1,000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표 1.3 : 글로벌 HS CODE 0810.50 수입액 규모(2014 ~ 2016)

(단위 : 천 달러, %)

수입국가	2014	2015	2016	2016 점유율	CAGR(2014-2016)
글로벌	2,356,557	2,398,739	2,595,705	100.0%	5.0%
1 중국	195,481	266,795	343,098	13.2%	32.5%
2 일본	209,987	224,988	286,854	11.1%	16.9%
3 벨기에	204,060	187,540	207,777	8.0%	0.9%
4 독일	208,905	194,213	190,230	7.3%	-4.6%
5 스페인	192,189	173,163	167,001	6.4%	-6.8%
26 싱가포르	15,777	18,357	19,488	0.8%	11.1%
기타	1,027,729	1,066,390	1,215,829	53.2%	1.9%

표 1.4 : 싱가포르 HS CODE 0810.50 수입액 규모(2014 ~ 2016)

(단위 : 천 달러, %)

수입국가	2014	2015	2016	2016 점유율	CAGR(2014-2016)
글로벌	15,777	18,357	19,488	100.0%	11.1%
1 뉴질랜드	11,165	12,011	12,287	63.0%	4.9%
2 이탈리아	3,131	4,112	4,320	22.2%	17.5%
3 말레이시아	111	158	612	3.1%	134.8%
4 호주	659	534	581	3.0%	-6.1%
5 칠레	350	319	443	2.3%	12.5%
9 대한민국	0	500	211	1.1%	-
기타	361	723	1,034	5.3%	69.2%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5. 연평균 성장률 = 최신훈최초연도^(1/n-1개년)-1

2. 무역통계 종합분석

뉴질랜드, 싱가포르 키위 시장에서 수입액 점유율 높아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5년간 싱가포르 HS CODE 0810.50 주요 수입국 중 뉴질랜드가 69.4%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국가였음. 한편, 5년간 가장 연평균 증감률이 크게 증가한 국가는 251.7% 증가한 말레이시아였음. 한편 2015년 대비 2016년 키위 수입액 성장률이 급상승한 국가는 1년간 289.9%가 증가한 중국이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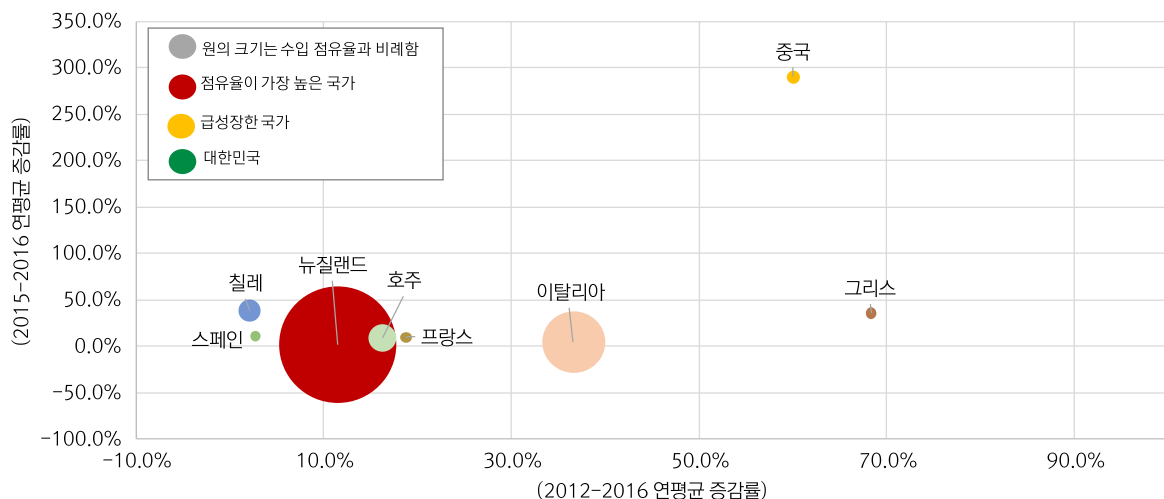
한국산 키위, 점유율 9위, 성장률 최근 1년 동안 하락세

한국의 경우 2012년 이후 5년간 점유율 0.8%로 전체 수입국 중 6위를 차지하고 있음. 2012년부터 2014년간은 수입이 없었으나 2015년 50만 달러였던 것이 2016년에는 21만 1,000달러로 떨어져, 2016년에는 전년대비 57.8%의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1.5 : 싱가포르 HS CODE 0810.50 수입 점유율 및 증감률 비교^{6,7,8}.

(단위 : %)

수입국가	2012-2016 점유율	CAGR(2012-2016)	CAGR(2015-2016)
1 뉴질랜드	★69.4%	11.4%	2.3%
2 이탈리아	19.6%	36.6%	5.1%
3 호주	3.6%	16.3%	8.8%
4 칠레	2.5%	2.1%	38.9%
5 말레이시아	1.0%	★251.7%	287.3%
6 대한민국	0.8%	-19.4%	-57.8%
7 중국	0.7%	60.0%	★289.9%
8 스페인	0.6%	2.7%	11.2%
9 그리스	0.6%	68.4%	35.5%
10 프랑스	0.6%	18.8%	9.4%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 거품형 그래프 내 원의 크기는 싱가포르 시장 내 점유율(비중)을 나타냄
- 거품형 그래프 내 원이 위로 갈수록 최근 1년간 높은 수입 증가세를 나타낸 국가임
- 거품형 그래프 내 원이 오른쪽으로 갈 수록 최근 3년간 높은 수입 증가세를 나타낸 국가임

3. 품목통계 종합분석

글로벌 키위 생산 규모, 2012년 이후 3년간 8.8% 대폭 증가

2014년⁹⁾ 기준 글로벌 키위 생산량 규모는 344만 7,605톤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8.8%의 증가세를 보임. 생산량 1위국 중국의 생산량 규모는 184만 톤으로 연평균 12.5%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53.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2위국 이탈리아는 50만 6,958톤, 생산량은 중국의 1/6 수준으로, 연평균 14.8%의 높은 생산량 증가세를 나타냄

싱가포르, 키위 자국 생산 없이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

2014년 기준 싱가포르의 키위 생산량은 0톤으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음. 싱가포르는 국토의 1%만이 농업용지로 사용되는 비농업국가인데다가 키위의 특성상 적도의 열대 기후가 맞지 않아 싱가포르는 키위를 수입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6 : 글로벌 키위 생산량 동향(201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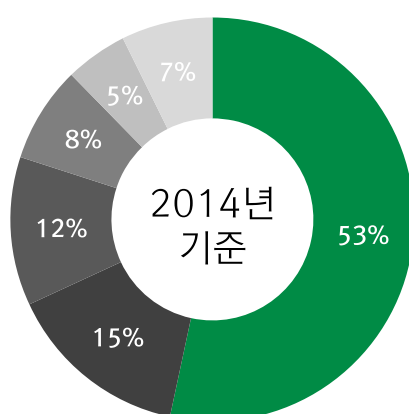
(단위 : 톤)

국가	2012	2013	2014	2014 점유율	CAGR(2012-2014)
글로벌	2,914,205	3,275,096	3,447,605	100%	8.8%
1 중국	1,452,767	1,765,847	1,840,000	53.4%	12.5%
2 이탈리아	384,844	453,737	506,958	14.7%	14.8%
3 뉴질랜드	376,400	402,932	410,746	11.9%	4.5%
4 칠레	286,082	271,765	266,017	7.7%	-3.6%
5 그리스	161,400	133,700	171,510	5.0%	3.1%
- 싱가포르	0	0	0	0.0%	-
기타	252,712	247,115	252,374	7.3%	-0.1%

출처 : FAOSTAT(www.fao.org/faostat)

표 1.7 : 글로벌 키위 생산량 점유율(2009-2014)

(단위 : %)



■ 중국 ■ 이탈리아 ■ 뉴질랜드 ■ 칠레 ■ 그리스 ■ 기타

출처 : FAOSTAT(www.fao.org/faostat)

9. 농업 통계 사이트 FAOSTAT 내 2015-2017년 통계 수치가 존재하지 않아 가장 최신 년도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함

3. 품목통계 종합분석

싱가포르, 1인당 키위 소비량 증가 추세

2014년 기준 싱가포르 키위 시장에서 싱가포르 자체 생산량은 0톤, 수입량은 5,452톤, 수출량은 691톤, 수요량은 4,761톤, 자급률 0%, 1인당 소비량은 0.86kg의 규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키위를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키위 수요량의 전부를 수입산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싱가포르는 수요량보다 많은 키위를 수입하되, 무관세 덕에 수요량을 제외하고 남은 수입된 키위를 중개무역의 일환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싱가포르 키위 수입량은 수요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09년 3,000톤 규모였던 키위 수입량은 2011년 4,000톤 규모, 2014년에는 5,000톤 규모를 넘어서는 추이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됨

싱가포르 1인당 키위 소비량 역시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9년 당시 0.64kg 였던 키위 소비량은 2014년 0.86kg으로 증가한 상태임

표 1.5 : 싱가포르 키위 수급동향(2009-2014)^{1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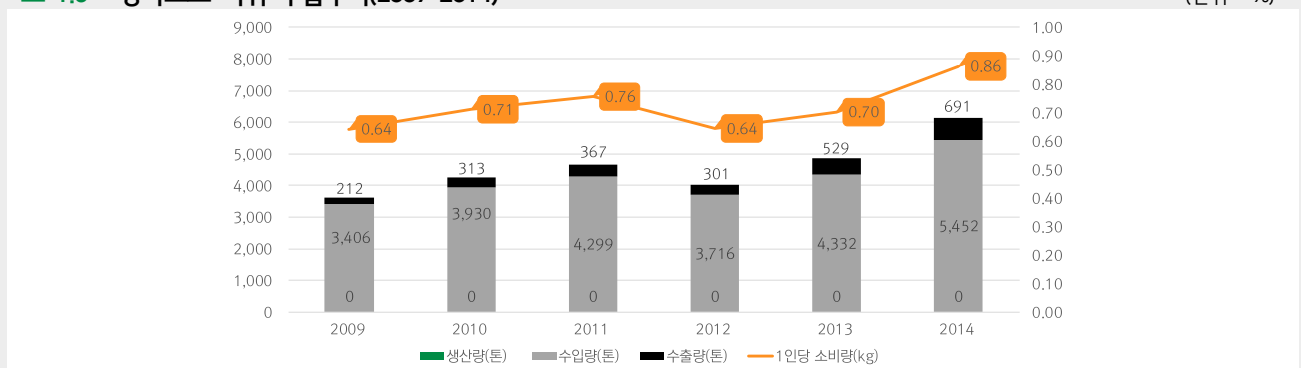
(단위 : 톤, %, kg)

	생산량(톤)	수입량(톤)	수출량(톤)	수요량(톤)	자급률(%)	1인당 소비량(kg)
2009	0	3,406	212	3,194	0.0%	0.64
2010	0	3,930	313	3,617	0.0%	0.71
2011	0	4,299	367	3,932	0.0%	0.76
2012	0	3,716	301	3,415	0.0%	0.64
2013	0	4,332	529	3,803	0.0%	0.70
2014	0	5,452	691	4,761	0.0%	0.86
2015	0	6,304	632	5,672	0.0%	1.02
2016	0	6,744	772	5,972	0.0%	1.06

출처 : FAOSTAT(www.fao.org/faostat),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표 1.6 : 싱가포르 키위 수급추이(2009-2014)

(단위 : %)



출처 : FAOSTAT(www.fao.org/faostat),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10. 수요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으로 산출한 추정치임

11. 자급률=생산량/수요량*100%로 산출한 추정치임

12. 1인당 소비량=수요량/연도별 싱가포르 전체 인구로 환산한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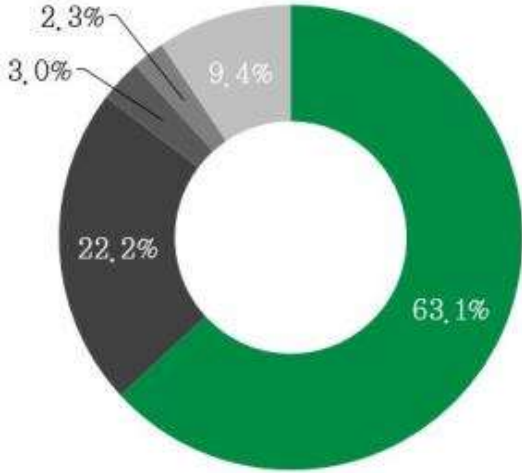
Ⅱ. 경쟁국가 분석

※ 경쟁사 분석 OVERVIEW

1. 경쟁국가 선정
2. 경쟁국가별 현황 파악

경쟁국가 분석 OVERVIEW



		뉴질랜드	이탈리아	호주
국가 개요	주요 재배지	뉴질랜드 북섬	중부지역	빅토리아 지역
	기후	온화한 해양성 기후	온난 습윤한 지중해성 기후	북/서부 열대 기후 남부 온대 기후 내륙 대륙성 기후
	키위 재배면적 ^{13.}	14,340 ha(-)	8,000 ha(-)	309ha(-)
	생산규모	38만 2,337톤(2016년)	44만 7,560톤(2016년)	4,239톤(2017년 1월)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그린 키위	 그린 키위
싱가포르 수입 키위 시장점유율		 ■ 뉴질랜드 ■ 이탈리아 ■ 호주 ■ 칠레 ■ 기타		

13. 각 국가별 재배면적 내용상 기준년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1. 경쟁국가 선정

경쟁 국가 선정 프로세스

방법론 01. 2016년 싱가포르 키위 수입량 상위 국가 Global Trade Atlas 활용

- 2016년 기준, 홍콩의 키위 수입량 조사
 - 뉴질랜드(63.1%)
 - 이탈리아(22.2%)
 - 호주(3.0%)
 - 칠레(2.3%)
 - 기타(9.3%)

방법론 02. 온라인 쇼핑몰 조사 온라인 쇼핑몰 조사

- 키워드 : Kiwi fruit(키위), Gold kiwi(키위)
- 온라인 쇼핑몰 분석
 - 회사 개인 홈페이지, 혹은 온라인 쇼핑몰 분석

방법론 검증을 통한 경쟁사 도출

방법론 01(시장점유율)
+ 방법론 02(온라인 조사)

뉴질랜드, 이탈리아, 호주 총 3개국 도출

표 2.1 : 경쟁국가 도출 결과

뉴질랜드	이탈리아	호주
		
· 싱가포르 수입량 상위 국가 ☒	· 싱가포르 수입량 상위 국가 ☒	· 싱가포르 수입량 상위 국가 ☒
·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판매 국가 ☒	·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판매 국가 ☒	·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판매 국가 ☒

2. 경쟁 국가별 현황 파악

Zespri 정보

· 대표 전화
: +64-7-572-7600
· 주소
: Mount Maunganui South,
400 Maunganui Road,
Mount Maunganui, New Zealand
출처 : Zespri(www.zespri.com)

국가 분석 :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3번째 키위 생산국이며, 유명 키위 브랜드인 Zespri의 본사가 있는 국가임. 현재 전체 세계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2008년에서 2009년에 시장 금액 1조 원을 돌파하였음. 주요 생산지는 Bay of Plenty 지방으로 뉴질랜드 북 섬에 위치한 지방이며, 뉴질랜드 전반은 온대 해양성 기후를 띄나 북섬의 경우 연중 따뜻하여 키위 재배에 적합함

[국가 개요]

① 글로벌 생산량 순위	3위(2016년)
② 키위 재배 면적	14,340ha(-)
③ 키위 생산 규모	28만 5,700톤(2016년)
④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⑤ 싱가포르 수입 키위시장점유율	63.5%



출처 : New Zealand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www.hea.co.nz)

[대표 기업] Zespri



- 1997년 설립된 뉴질랜드 기업으로 50개 국가에 키위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키위 시장에서 30%의 양을 다루고 있음
-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한국 등에 생산지를 두고 있음
- 그린 키위, 골드 키위 등 6가지의 키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

출처 : Zespri (www.zespri.com)

[대표 생산지 및 품종]

대표 생산지	대표 품종	
중부지역	그린 키위	골드 키위

2. 경쟁 국가별 현황 파악

Kiwi Uno SPA 정보

· 대표 전화
: +39-0175-280700
· 주소
: Via Mattona, 174, C Verzuolo,
CUNEO 12039

출처 : Kiwi Uno SPA (www.rivoira.it)

국가 분석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세계 2위의 키위 생산 국가로 매년 약 44만 톤가량을 수확하고 있는데, 이는 북반구 생산량의 70%에 해당하는 많은 양임. 1970년 이후로 키위 생산량은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도의 재배 시설을 활용한 결과임. 주요 산지는 Latina, Piedmont, Emilia Romagna, Veneto이며 중부 및 북부 전역에 해당함

[국가 개요]

① 글로벌 생산량 순위	2위(2016년)
② 키위 재배 면적	8,000ha(-)
③ 키위 생산 규모	44만 7,560톤(2016년)
④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⑤ 홍콩 수입 키위시장점유율	22.2%



출처 : Fresh plaza(www.freshplaza.com)

[대표 기업] Kiwi Uno SPA



- 당사는 1980년 키위를 주력 제품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임
- 칠레에 Unikiwi Ltda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110ha의 농장을 통해 키위를 생산하고 있음
- 남반구와 북반구 양쪽에서 생산하여 1년 내내 키위를 생산하여 공급함
- 15,000톤의 키위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음
- 복숭아,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도 생산하고 있음

출처 : Kiwi Uno SPA (www.rivoira.it)

[대표 생산지 및 품종]

대표 생산지	대표 품종
중부 및 북부 전역	그린 키위

2. 경쟁 국가별 현황 파악

Seeka Australia정보

· 대표 전화
: +64-7-573-0303
· 주소
: Epping Road 123 2113,
Australia

출처 : Seeka Australia
(www.seeka.co.nz)

국가 분석 : 호주

호주의 키위 생산량은 약 5천 톤으로 세계 15위에 해당하여 인접국가인 뉴질랜드에 비하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북부 및 서부 지역은 열대 기후를 띄고, 내륙은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온대 기후인 동·남부 지역 일부에서 재배함

[국가 개요]

① 글로벌 생산량 순위	15위(2016년)
② 키위 재배 면적	309ha(-)
③ 키위 생산 규모	5,622톤(2016년)
④ 주요 재배 품종	그린 키위
⑤ 싱가포르 수입 키위시장점유율	3.0%



출처 : Knoema (knoema.com)

[대표 기업] Seeka Australia



- 뉴질랜드의 농산품 전문 기업인 Seeka Ltd의 자회사로 호주 내 최대 키위 재배 업체임
- 빅토리아의 Shepparton에 농장 및 포장 공정을 위한 공장 위치함
- 재배 면적은 250ha로 키위와 배를 중심으로 주로 생산하며, 자두, 체리 등 다양한 과일을 생산함

출처 : Seeka Australia (www.seeka.co.nz)

[대표 생산지 및 품종]

대표 생산지	대표 품종	
호주 남부	그린 키위	골드 키위



Ⅲ. 통관 및 검역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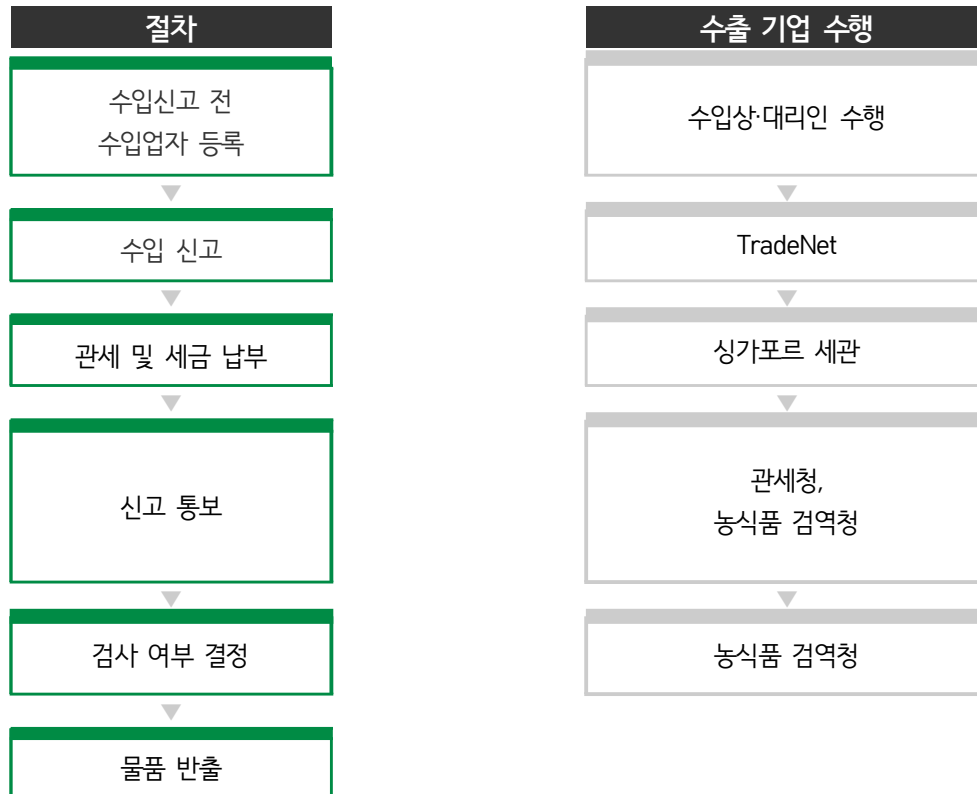
※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 관세율 정보 OVERVIEW

1. 통관 및 검역 절차
2. 관세율 정보
3. FTA 정보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통관 및 검역절차 OVERVIEW

싱가포르 통관 검역 절차도



출처 :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v.sg)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통관절차	유의사항
수출 전 절차	- 싱가포르의 농식품 검역청에 수입업자 등록
수입 신고	- 수입신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되고 TradeNet으로 EDI System을 통해 제출되어야 함
관세 및 세금 납부	- 관세는 관세납부 대상에 한하여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함 - Inter Bank GIRO를 통해서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
신고 통보	-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농식품 검역청에 수입 신고 내용 통보
검사여부 결정	- 농식품 검역청의 수입식품 검사여부 결정 (면제, 표본 및 전체에 대한 검사 진행)
물품 반출	- 컨테이너 화물은 무서류 신고 및 신고수리 되어 반출됨 - 검사 대상이 된 수입 물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됨

출처 :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v.sg)

관세율 정보 OVERVIEW

2017년 싱가포르 관세율 정보

HS CODE	품명	기본세율	FTA 협정세율 ¹⁴
0810	기타 과일(신선한 것으로 한정)	-	-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0810.50.00	키위프루트(Kiwifruit)	0%	0%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협정세율 정보

싱가포르에서 HS CODE 0810.50.00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모두 **0%** 적용

싱가포르 기타 부가세 정보

싱가포르에서 2017년 기준, HS CODE 0810.50.00의 경우

GST(상품 및 서비스세) 7%가 부과되고 있음

TIP_제품 관세율 확인법

관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확인하거나, FTA 세율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의 'FTA/관세' 메뉴를 활용하여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관세청의 관세율 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함

분류	사이트명	URL
관세율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Tradenavi	www.tradenavi.or.kr
	싱가포르 관세청	www.customs.go.sg

보다 더 정확한 품목별 HS CODE 및 관세율 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 콜센터' 혹은 'FTA콜센터'의 관세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문 관세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함

분류	사이트명	전화번호
관세율	트레이드 콜센터	☎ 1566-5114
	FTA 콜센터	☎ 1380

14. 한·아세안 FTA와 한·싱가포르 FTA 각각 협정세율 0% 적용됨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01. 수입업자 등록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을 통해 수입업자 등록증 및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함.
농식품 검역청에 수입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회계기업 등록청(www.acra.gov.sg)에 회계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은행간 GIRO¹⁵망을 통해 농식품 검역청에 관련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함

Step 02. 수입신고

싱가포르의 수입신고는 전자 통관 시스템인 TradeNet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 컨테이너 화물과 비컨테이너 화물로 나뉘어 신고가 진행됨.
이외에 수입신고 시 하기 표 3.1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Step 03. 관세 및 세금납부

싱가포르의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무관세 국가이기 때문에 주류, 담배, 차량, 석유 4개 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됨

하지만 상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라는 내국세를 납부해야 하며, Inter-Bank GIRO(IBG)를 통해 납부가 가능함

표 3.1 : 싱가포르 수입식품 통관서류

- | | |
|--|---------------------------------|
|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 -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Bill of Lading/Airway Bill) | - 화물통관허가서(CCP) |
|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 수출검역증명서 |
| - 운임명세서 | |

출처 :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sg)

15. 인터넷 은행간 계좌

1. 통관 및 검역절차

Step 04. 신고 통보

관세와 상품 및 서비스세를 납부하게 되면 싱가포르 관세청은 농식품 검역청에 수입신고를 통보함. 이후 농식품 검역청은 해당 제품이 검사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함

Step 05. 검사 및 통관

수입업자 등록 및 수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판매허가를 받거나 검사가 필요한 제품에 한하여서는 집중검사를 시행함. 농식품 검역청에서 검역 및 성분 분석을 통하여 수입가능 여부가 결정됨

표 3.2 : 해외통관 애로사항 문의처

기관	연락처
관세청 해외 통관 지원센터	전화 : 042-472-2197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전화 : +65-6256-1188
싱가포르 관세청	전화 : +65-6355-2000

표 3.3 : 싱가포르 검역 정보

담당처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
신청방법	· 싱가포르 경제진흥청 내 온라인 비즈니스 면허 서비스(OBLS)를 통해 전산 접수 가능 · 승인 처리까지 약 3일 소요
신청비용	· 없음
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Codex의 국제 표준
검역	· 검역 탈락 시 해당 제품은 수입 금지되며 농식품 검역청(AVA)의 감독 하에 폐기되는 것이 원칙임
주의사항	·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숙지 필수 · 사전 검사 필요 품목에 대해서는 미리 서류작업을 진행해야 함 ¹⁶ . · 소량(5kg 이상, 100싱가포르 달러 초과)이라도 상업적 수입으로 분류되면 수입허가가 필요함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www.ava.gov.sg)

16. 수출국 식물검역증의 첨부를 요하는 품목이며, 버섯의 경우 해당함. 따라서 식물검역증이 화물이 송부되기 전 14일 내에 발행된 것으로 준비되어야 함

2. 관세율 정보

HS CODE 0810.50.00 품목의 경우,

한·아세안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적용으로 0% 부과

실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참여기업의 ‘키위’는 싱가포르 내 품목분류체계에 따라 HS CODE 0810(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으로 분류됨. 상세분류는 HS CODE 0810.50.00(키위[Kiwifruit])에 속함

싱가포르는 주류, 담배, 유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임. 또한 한국과 아세안국가는 최혜국 세율의 예외로써 FTA 양허세율이 우선적으로 작용됨. 따라서 HS CODE 0810.50.00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협정세율 0%가 부과됨

HS CODE 0810.50.00, GST(상품 및 서비스세) 7% 부과

싱가포르에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 가운데 주류를 제외한 모든 수입대상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됨.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관하여 7% GST가 부과되며 예외사항은 없음. 따라서 ‘키위’의 경우 GST 7%가 부과됨. GST는 싱가포르 영외로 재수출 시 환급가능하며, 기타 비관세 장벽 및 쿼터 등의 무역장벽은 없음

표 3.4 : 싱가포르 HS CODE 분류 및 관세율 정보

국가	HS CODE	품명	기본세율	FTA 협정세율 ^{17.}
한국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		-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싱가포르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		-
	0810.50	키위프루트(Kiwifruit)		
	0810.50.00	키위프루트(Kiwifruit)	0%	0%

출처 : 한국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싱가포르 관세청(www.customs.gov.sg)

17. 한·아세안 FTA와 한·싱가포르 FTA 각각 협정세율 0% 적용됨

3. FTA 정보

HS CODE 2103.90.90, 한-싱가포르 FTA 체결로 관세 0%

실제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하거나 관세청 UN-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법 등이 있음

원산지증명서 발급

· 증명 방식 : 기관증명
· 증명 주체
 - 싱가포르 : 세관
 - 한국 : 세관 또는 자유무역관리원
· 증명서 유효기간 : 1년
· 사용 언어 : 영어
· 사용 횟수 : 1회 사용 원칙

출처 : 관세청 FTA포털시스템
(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한국은 1975년 싱가포르와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한 이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06년 3월 1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

FTA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¹⁸.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임. 발급 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한·싱가포르 FTA 협정은 기관발급 방식을 따름. 상대국에서 FTA 세율을 적용할 경우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가능함

표 7.5 : 기관 방식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증명서 신청 시기	국내 원칙 : 수출물품 선적 전 예외 : 수출물품 선적 이후(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서류	선적 이전 :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원산지소명서 및 소명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BOM,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발급방법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은 종이 문서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발급이 완료된 후 업체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수입자에게 원본으로 제공. 단, 일부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가 없을 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뒷면까지 인쇄하는 것을 권장 원산지증명서 중 ‘Original’은 출력이 한 번만 되므로 인쇄 상태를 확인한 후 출력함. 또한 흑백 인쇄 시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반려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컬러로 출력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 도난,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재발급이 가능
원산지증명서 수정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탈자, 누락 또는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려 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면 수정발급 가능

출처 : FTA 종합지원센터(okfta.kita.net/originPlace.do?method=certiIssue02&mainNum=030502)

18.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 회원인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비회원인 건당 7,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됨. 하지만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4. 통관 및 검역 유의사항

싱가포르의 식물 검역제도

식물 검역 제도의 법령체계는 식물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업 병해충(식물수입) 규칙으로 정함. 식물(Plant)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신선과실, 잎, 뿌리, 괴경, 구근, 뿌리대목, 삽수, 휘묻이, 접지, 흡지, 종자, 포트나 다른 용기에 자라는 살아있는 식물 및 번식용 또는 번식에 사용될 수 있는 식물의 일부만 포함됨. 모든 수입식물 및 식물성 산물에는 금지 병해충이 없어야 함. 싱가포르에서 수출국 식물 검역증의 첨부를 요하는 품목은 포트에 재식된 식물, 식물번식 물질, 재식용 식물, 종자류, 버섯균사 및 장식용의 잎 및 가지 등이 있음. 식품 검역증은 화물이 송부되기 전 14일 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싱가פור는 식품, 식물의 위생에 대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지만, 아시아 지역 물류운송의 허브에 걸맞는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이나 관련서류를 미리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식품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의 농·축산물 수입절차

싱가포르 내 농·축산물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음

-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사업자 등록 및 CR(할당번호 Central Registration Number)신청
- TradeNet을 통한 수입신고 :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수입허가 및 등록을 신청하면 샘플검사를 통해 허가를 내줌
- 식물,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AVA, 건강식품 및 의약품류는 HSA(Health Science Authority)에서 담당

관세청 제품번호(Product Code)기재

싱가פור는 국제통일상품분류인 HS Code 이외에, 모든 수입신청서에 자국의 관세청 제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관세청 제품번호는 수입제품의 담당관청 및 표본조사, 수시조사, 전량조사 등의 검역방법 등에 대한 분류의 신속화를 통한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이사항이 없는 물품의 경우 1 ~ 2일 이내에 통관이 완료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제품번호의 오기 등으로 통관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주의가 요구됨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안내사이트(TradeExchange)¹⁹를 통해 개별 HS번호에 해당되는 제품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AVA에서는 식품류와 관련된 제품번호 안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19. URL : www.tradexchange.gov.sg



IV. 인증 정보

※ 인증 정보 OVERVIEW

1. 인증 취득정보
2. 제출서류
3. 전문가 인터뷰

인증 정보 OVERVIEW

필수 허가 : AVA 무역 허가 또는 등록신청

허가 설명	무역 허가가 승인된 국가에서 인가된 식품만 싱가포르로 수출이 가능하며, 또는 AVA ²⁰ 에 허가 또는 등록된 업체만이 식품을 수입할 수 있음
허가가 요구되는 사항	- 육류 및 어류 제품의 수입·수출 및 운송 - 신선 채소 및 과일의 수입 또는 운송 - 신선 계란의 수입
승인기관	AVA(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
성격	필수 허가
발급절차	TradeNet ²¹ 을 통한 수입신고 : 품목별로 해당 정부기관에 수입허가 및 등록을 신청하면 샘플검사를 통해 허가를 진행함
기타	수입허가는 항공, 육로운송, 우편 등 운송수단의 종류와 상관없이 필수로 요구 됨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www.ava.gov.sg)

권장인증 : HACCP(품질안전인증)

인증 설명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오염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자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격	선택 인증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영업자·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비용	수수료 20만 원	
발급절차	신청서 제출 → 심사 → 승인 후 인증서 발급 → 지속적인 심사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korea.or.kr)

20.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AVA)

21. www.tradexchange.gov.sg

인증 정보 OVERVIEW

권장인증 : ISO 22000

인증 설명	식품공급사슬 내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 ISO 22000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HACCP의 7원칙과 12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발행기관	한국표준협회(KSA, Korean Standard Association)	
성격	선택 인증	
제출서류	인증심사 신청서(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비용	기본 심사 수수료 약 106만 원, 품목, 일수마다 추가 요금 약 20만 원, 그 외 출장비	
갱신기간	3년 (이후 3년 단위로 갱신해야함)	
발급절차	문의신청 → 예비심사 → 문서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심의 → 인증서 발행 등록 → 사후관리 심사	
유의사항	ISO 22000은 국제 표준의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서 유통의 중간 식품 공급망을 관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장비, 포장재, 세척제, 식품 첨가제, 원료 등의 상호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으로 식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함	

출처 :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권장인증 : 유기농산물 및 유기 축산물 인증

인증 설명	유기농산물 및 유기축산물에 해당되는 인증이며,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는 무농약재배의 인증의 경우 해당됨
인증 대상	대한민국에 있는 친환경농업교육을 이수한 개인 또는 조직
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선택 인증
발급절차	인증심사접수 → 인증기관의 심사계획 통보 → 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인증서 교부(인증기준 적합 시)
유의사항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며 인증서발급 후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1년 동안 인증이 유효함



출처 : 한국유기농협회(www.organic.or.kr)

1. 인증 취득정보

필수 허가 : AVA 무역 허가 또는 등록신청

싱가포르에서 과일 및 채소류, 수산물 등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가능하나 금지된 살충제, 독성물질 또는 유사물질 기준치가 싱가포르 허용기준 및 CODEX의 권장 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입이 금지됨. 또한 과일 및 채소류 수입 시 제품의 용기제조업체명 및 제조업체 주소, 제품 설명, 수출 및 포장일자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위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수입허가를 위해서는 TradeXchange System(TradeNet)을 통하여 신청을 하여야 함.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어떤 경로에 상관없이 AVA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함. 주요 수입허가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4.1 : 수입허가를 위한 주요 절차

STEP 01.

- 준비사항 : 허가증(licence) /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및 제품의 HS CODE
- 허가를 위한 AVA 제품 코드 아래와 같이 분류
 - Fish and fish products
 - Fresh fruits and Vegetables
 - Meat and meat products
 - Processed food products and food appliances

STEP 02.

- TradeXchange System 통해서 수입허가를 신청하면 고유참조번호가 부여됨

STEP 03.

- 요구되는 다른 서류가 있다면 TradeXchange System를 통해서 추가서류를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 예시) 특별 관리 품목의 경우 실험보고서 또는 보건증명서 등이 추가서류로 요구됨

STEP 04.

- 싱가포르 세관 및 AVA의 승인 후에는 AVA 수입 허가 역할을 하는 화물 통관 허가(Cargo Clearance Permit ; CCP)를 발행

STEP 05.

- CCP를 출력하고 제품 검문소 통관 시, 검사 등에 필요할 경우 사본 사용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www.ava.gov.sg)

1. 인증 취득정보

권장인증 : HACCP

HACCP 인증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 발생 여건을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임

싱가포르의 식품 안전 요구사항은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cheme)와 CODEX의 국제표준에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의 싱가포르 F&B (Food & Beverage) 공장은 EC와 미국 FDA와 같은 외국의 식품 안전 당국의 인증을 받은 곳이 많음. HACCP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EU, WHO, FAO 등 국제기구에 서도 모든 식품에 HACCP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임

권장인증 : ISO 22000

ISO 22000은 식품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 제도임. 전 세계 14개 국가가 ISO 산하 기술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된 식품 안전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으며, 기술분과위원회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안전협회 유럽식품산업협회 등의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

ISO 22000은 국제 표준의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으로서 유통의 중간 식품 공급망을 관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식품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장비, 포장재, 세척제, 식품 첨가제, 원료 등의 상호 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으로 식품과 관련된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함

표 4.2 : ISO 22000 인증 획득 절차

STEP 01.	STEP 04.
- 문의 및 신청 진행	- 인증 심의 등록
STEP 02.	STEP 05.
- 인증 계약	- 사후관리심사 진행
STEP 03.	STEP 06.
- 문서 및 현장 심사 진행	- 갱신 심사(3년 주기로 진행)

출처 :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1. 인증 취득정보

권장인증 : 유기농산물 및 유기 축산물 인증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인증 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임. 친환경농축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을 의미함

친환경농축산물 관리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기준을 준수 했는지의 엄격한 품질 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는 타 국가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 유기농 인증 또한 인정하고 있음

한·미 동등성 인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4. 7. 1.부터 발효됨.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표 4.3와 같은 동등성 인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 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음

한·EU 동등성 인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5. 2. 1.부터 발효됨.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표 4.3와 같은 동등성 인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 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음

1. 인증 취득정보

표 4.3 : 유기 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정보

	한·미 동등성 인정	한·EU 동등성 인정
동등성 인정 국가명	미국	유럽연합
인정 범위	가. 한국(또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상의 분류 기준 적용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가. 한국(또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기준 적용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동등성 인정 관련 조건	가. 항생제(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시클린)가 사용된 사과·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표시 불가 나.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다.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가.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나.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동등성 인정 유효기간	별도 협의 시까지	2018년 1월31일 까지

출처 :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2. 제출 서류

HACCP 제출 서류

: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서류심사를 거칠 때 인증심사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

※ 첨부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인증 연장 40일 80일
영업신고(등록) 번호		영업신고(등록) 연월일		
영업소명		전화번호 E-mail :		
신청인	소재지	본사		
	공장(사업장)	* 집단급식소 중 위탁운영의 경우 그 이름과 소재지, 신고번호를 기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휴대전화	
HACCP팀장		생년월일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용	HACCP적용 식품명(유형)		인증번호	
	HACCP적용 규모 ☐ 일반 ☐ 소규모			
	※ 소규모 HACCP : 해당품목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경우			
	HACCP적용 품목별(유형) 1년간 생산실적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품목명	생산실적(단위: 천원)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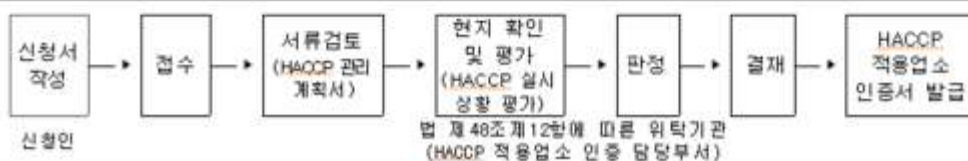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등을 말합니다)	수수료
	2.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 인증서 일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00,000원

처리절차



2. 제출서류

ISO 22000 제출 서류

: ISO 22000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며, 취득을 위해 서류 심사를 거칠 때 인증심사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 함

KSA

인증심사 신청서

이 신청서는 귀 조직의 인증심사원수 및 심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오니, 모든 해당 항목을 정확히 기록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전화: (02)6009-4671 ~ 9 팩스: (02)6009-4689

1. 조직 정보

구분	내용	대표자	접수번호 (KSA 각국)
조직명	성명	부서	직책
	전화	휴대폰	입장권 언어
	팩스	E-mail	입장권 언어

2. 인증신청 현황

사업장명	주소	인원수 (정규/비정규)	고대근로 형태 (24시간/정규시간)
신청표준	☐ ISO 9001:2008 ☐ ISO 14001:2004 ☐ ISO 9001:2015 ☐ ISO 14001:2015 ☐ K-QHSMS 18001 ☐ ISO 22000 ☐ TL 9000(H/V/N:해발사할에 O표) ☐ ISO/IEC 27001 ☐ 녹색경영시스템(GMS) ☐ ISO 50001 ☐ ISO 20121 ☐ ISO 55001 ☐ 기타 ()		
인증 신청종류	제품/ 서비스	산업분류코드 ※ 4자 X 10자 필요	
신청 외 제품/서비스	활동 ☐ 설계/개발 ☐ 제조 ☐ 설치 ☐ 운송 ☐ 판매 ☐ 부가서비스 ☐ 기타()		

※ 인증대상 사업장의 2개 이상장 적용하는 '1. 복수사업장' 항목에 기재해 주시기요

3. 복수사업장 현황

복수사업장 구분	1. ISO 9001:2008	2. ISO 14001:2004	3. ISO 9001:2015	4. ISO 14001:2015	5. K-QHSMS 18001	6. ISO 22000	7. TL 9000(H/V/N:해발사할에 O표)	8. ISO/IEC 27001	9. 녹색경영시스템(GMS)	10. ISO 50001	11. ISO 20121	12. ISO 55001	13. 기타
사업장명	주소	인원수 (정규/비정규)	고대근로 형태 (24시간/정규시간)										

4. 지원사업장 현황

※ 주사업장/본사업장 또는 주 사업장과 별도로 지원기업(설계, 제작, 부품제조 등)을 담당하는 사업장이 주 사업장과 떨어져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업장명	주소	인원수	지원기능
------	----	-----	------

5. 건설업종 추가설문

1. 인증을 시공현장 수 : (예: 건축 5개, 토목 6개)
2. 해당 공사현장의 총공사 공정진행률은 몇 %입니까? % 30~80%인 공정 중에서 기록

첨부 : 1) 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장도
 4) 소독제 검사결과표 또는 노동부에 신고된 공인된 검사자료(현재 적용인원이 확인되는 경우 성적 가능)

위와 같이 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제안을 요청합니다.

신청자

한국표준협회 귀중

20 . . .

3. 전문가 인터뷰

Q1. 싱가포르의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싱가포르에 키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구입·이용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금인 상품서비스세금(GST : Goods and Services Tax)이 부과하는데 통상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싱가포르 관세청
Singapore Customs 담당자와의 인터뷰 중, 2017.08

Q2. 싱가포르에 키위를 수출할 때 필요한 필수인증은 무엇인가요?

“싱가포르에 키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농림수산부에서 발행하는 AVA 수입자격증(AVA Import License)을 필히 준비해야 합니다. AVA 수입자격증은 식품 관련제품이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할 인증절차로 싱가포르에서 AVA 수입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현지기업을 통해서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농림수산부
AVA(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담당자 인터뷰 중, 2017.08



V. 라벨링 정보

※ 라벨링 정보 OVERVIEW

1. 라벨 표기사항
2. 라벨링 예시

라벨링 정보 OVERVIEW

싱가포르 포장식품 라벨링 필수 표기사항



- 제품명
- 구성성분
- 순 중량
- 수입업자의 업체명 및 주소
- 원산지
- 유통기한
- 영양 성분 표시
- 보관방법

출처 : Zespri(www.zespri.com)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www.ava.gov.sg)

싱가포르 포장식품 라벨링 상세 표기사항²²

항목	설명
표기 언어	영어
글자 크기	식품명, 구성성분, 순중량 및 식용색소 함유량은 글자 최소 높이가 1.5mm여야 하며 바탕이 열을 때는 짙은 색, 바탕이 짙을 때는 열은 색 글자로 인쇄되어야 함
제품명 또는 설명	식품의 일반 명칭으로 실제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함. 식품의 성질과 관계없는 상표 및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 일반 명칭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
구성 성분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기록되어야 함. 가급적이면 각각의 함유량을 표시하고 함량이 많은 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음
순 중량	음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은 순 중량이 표시되어야 함
수입업자의 업체명 및 주소	싱가포르 내 수입자, 유통자, 대리점 등은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산지	수입식품은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국가명으로 표시함 (도시, 지역명 불가)
유통기한	Use By, Sell By, Expiry By, Best Before 등으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함
보관방법	온도 및 주의해야할 사항 표기
표시 위치	'쉽게 보여야 한다'라는 규정 이외에 별다른 규정은 없음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www.ava.gov.sg)

22. 싱가포르는 신선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더 넓은 범주인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과 현지조사결과 경쟁제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라벨링 표시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함

1. 라벨 표기사항

라벨 정보 확인

기관명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
사이트 : www.ava.gov.sg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 2017 식품 법규 개정안 발표

싱가포르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싱가포르 식품 관련법(Singapore Food Regulations)에 따라 라벨링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신선식품에 대한 상세 라벨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더 넓은 범주인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을 기반으로, 현지 조사 결과 경쟁제품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라벨링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함. ‘키위’의 경쟁제품 현지조사 결과 포함된 공통적인 라벨링 목록은 제품명, 순 중량, 유통업체 또는 포장업체, 원산지 등의 간략한 정보가 확인됨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의 ‘2017 식품 법규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포장식품의 유통기한, 특수목적 식품, 영양 성분 표기법 수정을 포함하고 있음. 포장식품의 유통기한은 글자 크기가 3mm 이상인 문자로 포장지에 양각 처리를 하거나 영구적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유통기한이 보관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식품의 보관 장소를 라벨 또는 포장지에 기재해야 함. 한편, 제품 포장에 영양 강조표시나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다면, 영양성분표 라벨이 필요함. 필수 표기 항목은 에너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영양 성분이 식품의 주요 영양 강조표시 성분이면 해당 성분도 기재해야 함

한편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은 싱가포르 내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자문위원을 두어 수출업자 및 생산자가 라벨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유기농 식품의 경우, 수출국의 유기농 인증서 필요

라벨링에 유기농 혹은 이와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경우, 이는 CODEX의 국제 표준 규정을 따르며, 모든 유기농 식품의 수입 시 수출국의 유기농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 AVA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에서 별도로 유기농 인증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며, 수출국의 유기농 인증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됨

1. 라벨 표기사항

표 5.1 : 싱가포르 포장식품 라벨 표기사항 상세

항목	설명
표기 언어	영어
글자 크기	식품명, 구성성분, 순 중량 및 식용색소 함유량은 글자 최소 높이가 1.5mm여야 하며 바탕이 열을 때는 짙은 색, 바탕이 짙을 때는 열은 색 글자로 인쇄되어야 함
제품명 또는 설명	식품의 일반 명칭으로 실제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함. 식품의 성질과 관계없는 상표 및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 일반 명칭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
구성 성분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기록되어야 함. 가급적이면 각각의 함유량을 표시하고 함유량이 많은 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음
순 중량	음료를 제외한 모든 식품은 순 중량이 표시되어야 함
수입업자의 업체명 및 주소	싱가포르 내 수입자, 유통자, 대리점 등은 상호 및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산지	수입식품은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국가명으로 표시함 (도시, 지역명 불가)
유통기한	Use By, Sell By, Expiry By, Best Before 등으로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높이는 3mm 이상이어야 함
보관방법	온도 및 주의해야할 사항 표기
표시 위치	'쉽게 보여야 한다'라는 규정 이외에 별다른 규정은 없음

출처 :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www.ava.gov.sg)

2. 라벨링 예시

라벨링 예시²³.



출처 : 현지방문조사(Fair Price, 2017.07)



출처 : 현지방문조사(Giant, 2017.07)

23. 본 보고서는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싱가포르 내 신선식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라벨링 예시로 대체하였음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싱가포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번역집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
--------------------------	----------	---------

※ 참고 사이트

1. 한국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싱가포르 관세청	www.customs.gov.sg
3. 싱가포르 농식품 검역청(AVA)	www.ava.gov.sg
4.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ertinfo.or.kr
5. 한국표준협회	www.ksa.or.kr
6. 유럽위원회	ec.europa.eu
7.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www.enviagro.go.kr
8. New Zealand Horticulture Export Authority	www.hea.co.nz
9. Zespri	www.zespri.com
10. Fresh plaza	www.freshplaza.com
11. Kiwi Uno SPA	www.rivoira.it
12. Seeka Australia	www.seeka.co.nz
13. Knoema	knoema.com